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3

발의연월일 : 2020. 7. 8.

발 의 자 : 이병훈・김영호・정청래
김남국・유정주・윤재갑
박성준・용혜인・문정복
박 정・이규민・양정숙
신영대・윤미향・서동용
전재수・장철민・이성만
박영순・권인숙・이해식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산업시설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으로 인한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거나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등에 대해 방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난 5월 22일에 광주 하남산단에서 폐합성수지 파쇄기 청소 작업 중 근로자가 미끄러져 기계에 말려 들어 갔으나 기계가 멈추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계・기구로 인한 사고의 예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계·기구의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및 위험을 조기에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제8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기구(이동식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포함한다)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장치(이하 “안전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중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기구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인력(人力)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기구의 작동 중에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2. 제1호에 따른 동력차단장치가 작동된 경우에 이상 상태를 알리기 위한 자동경보장치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적

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안전장치의 점검 및 정비사항, 사용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안전장치의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주에게 안전장치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0조제4호 중 “제85조제2항·제3항”을 “제80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175조제6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8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0조의2(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제8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기구(이동식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포함한다)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장치(이하 “안전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중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기구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인력(人力)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기구의 작동 중에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2. 제1호에 따른 동력차단장치가 작동된 경우에 이상 상태를 알리기 위한 자동경보장

	치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안전장치의 점검 및 정비사항, 사용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안전장치의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주에게 안전장치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제170조(벌칙) ----------

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제8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 8.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4. ----------제80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제3항----------
제175조(과태료)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신 설>	5. ~ 8.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8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 18. (생 략) ⑦ (생 략)	7. ~ 18.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